

고양특례시 덕양구 창릉동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전부 개정 2022. 3. 16
일부 개정 2022. 6. 22
일부 개정 2022. 8. 3
일부 개정 2022. 10.26
일부 개정 2022. 12.14
일부 개정 2024. 4. 24
일부 개정 2025. 8.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한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창릉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창릉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하며, 주민자치회 소재지는 창릉동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미디어(영상, 음성, 인쇄매체, 방송을 포함한다)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의 수탁처리

제5조(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① 시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
2. 주민자치,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주민 화합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0명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등)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1조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4.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5. 제28조에 따른 임기와 한 차례의 연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제30조제1항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등)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다양한 나이대 및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추천방식 : 공개 모집하여 공개 추첨을 통하여 선정(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심사방식 : 공개 모집하여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선정

② 제1항 각호의 방식에 따른 의원 수는 정수의 범위에서 모집공고 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원으로 선정된 후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회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각호별 예비 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 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 1. 제1항 각호별 예비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 2. 제1항 각호별 예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 ⑧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 감사 및 고문에 대한 주요 인적 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 감사 및 고문이 새로 위촉되는 경우에도 주요 인적 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동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 ⑨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은 타 직능단체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 1개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직능단체의 범위는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체육회, 방위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자율방범대, 시민안전지킴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한다.
- ⑩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명예 주민자치회 위원) ① 주민자치회는 동별 특성을 고려하여 명예 주민자치회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 위촉한다.
 ② 명예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과 활동 범위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선정위원회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자치회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자치회장이 선정 대상인 경우 자치회장이 추천하는 주민자치회 1명을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 분야에 관심이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1. 2년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
- 2. 2년 이상 동 직능단체에서 활동한 사람
- 3. 2년 이상 비영리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 4. 그 밖에 주민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동장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자 명부에서 동장과 자치회장이 각각 3명씩 무작위로 공개추첨하며, 추첨일과 장소는 사전에 모집공고 시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심의 등에 관한 사항
-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추천 운영
- 3. 그 밖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⑥ 선정위원회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 안배, 사회적 약자, 나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 회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⑦ 선정위원회 위원 심사 및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임원) ① 주민자치회는 임원으로 자치회장 1명, 2명 이내의 부회장,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감사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여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하며,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결과는 자치회장이 주민총회,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자치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자치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하고, 투표 업무를 진행하게 한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위원의 추천과 재청을 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선출하며, 이 경우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3조(간사 및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1명을 간사(사무국장)로 선임하고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사무국장)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 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간사(사무국장),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시간과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제34조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징수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1. 간사(사무국장), 사무국 근무자 : 실비 및 수당
- 2. 자원봉사자 : 실비

제14조(고문) ① 주민자치회에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문은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위촉하고, 해촉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은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주민소통위원회 : 지역 직능단체 및 주민단체, 아파트 입주자회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등 대외 활동 업무 수행 등 주민 소통에 관한 업무

2. 행복마을위원회 : 주민의 행복 나눔 활동을 개발·수행하기 위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마을의 봉사단체와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복지 향상에 관한 업무와 마을 축제(옹머리 축제)의 기획 및 실행, 지역문화 행사 및 전시회, 생활 체육 등 문화 여가 활동과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 화합과 참여에 관한 업무

3. 환경안전위원회 : 청정한 마을 환경 가꾸기와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제반 업무, 특히 모범적인 반려견 마을의 조성 등을 위한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업무

4. 미래교육위원회 : 미래의 동량이 될 우리 마을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제반 사업을 담당, 마을의 미래를 위한 소모임 육성과 사생대회 개최 및 시상 등에 관한 업무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조례 제9조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자치회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주어진 직무의 수행과 일련의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회장 및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은 소속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위원의 개별희망을 토대로 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사업 추진 역량과 특성,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둔다.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 위원 중 호선하며, 총무는 분과장이 지명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실행해야 할 의제 및 활동 상황 등에 따라 분과를 신설·폐지 또는 통·폐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 분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는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 마을의제 및 행정사무 위·수탁사업 발굴할 수 있다.

⑨ 분과위원회는 마을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필요시 전문가 등 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건

5. 그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7조(자치계획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건

7. 그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자치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서류의 생산 및 보존)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한다.

1. 회계 장부 및 회계 서류
2. 각종 회의에 따른 회의록
3.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기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서류 및 문서

제19조(직인의 비치) ① 주민자치회는 공적인 업무 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제작·비치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인은 회장이 관리하며 직인의 날인 및 신조, 개각, 폐기 시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서류에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20조(회의 및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3. 주민자치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다만, 자치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최고 연장자순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해당 회의에서 자치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의할 수 있다.
-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 업무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⑦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정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월 4째 주 수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개최할 수 있다.

- ② 출석위원들은 출석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정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치계획 수립
 2. 각 분과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
 3.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4. 정수의 변경
 5. 추첨 및 심사 공개모집 인원
 6. 회장·부회장·감사의 선출
 7. 위원의 해촉 및 임원 불신임 :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의결한다.
 8.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개정
 9. 별정조직·분과위원회 설치 및 폐지
 10. 명예 주민자치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의결
 11. 기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 ⑤ 제1항의 회의 종료 후 별지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회장단 회의) ① 회장단 회의는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간사(사무국장)로 구성한다.

제23조(임원 등 회의) ① 임원 등 회의(이하 “임원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가 있는 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임원회의는 선출직 임원, 별정조직의 장, 분과위원장, 그리고 간사(사무국장)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1. 각 분과위원회별 월간 활동 및 사업 진행사항 공유
 2. 각 분과위원회별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배분 심의
 3. 정기회의에 상정할 주요 안건에 대한 검토 및 결정
 4.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5. 각종 행정 정보의 공유 및 민·관 협력 방안 논의
 6. 기타 주민자치회 관련 긴급 사안 및 중요 사항에 대한 논의 및 결정

제24조(분과위원회 회의)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마을 의제의 발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등을 위해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활동 중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및 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한다.

-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 선출, 분과의 연간 사업계획 및 활동계획 수립 등 분과위원회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결정할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별 월간 활동 및 사업 진행사항 등 운영 결과를 매월 셋째 주 수요일까지 간사(사무국장)에게 문서로 제출하며, 이의 내용을 임원회의 및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제4장 주민자치회 위원

- 제25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된다.
-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7조와 관련하여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민자치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 위원은 소정의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40조 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7조(위원의 임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할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다. 다만, 한 차례 연임한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 시행일(2023. 12. 29.)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며, 이미 두 차례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위원의 대우 등) 주민자치회 위원, 고문 및 외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 남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8.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 분란을 야기한 경우
10. 주민자치회비를 5개월 이상 미납하여 자치회 활동 및 위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경우
11. 정기회의 연속 3회 이상 불참, 또는 연 5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12.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連署)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자치회장·부회장·감사의 불신임 의결)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부회장·감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불신임 의결이 있는 경우 자치회장·부회장·감사는 해당직에서 해임된다.

제3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의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5조에 따른 회비를 5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장 재정 및 운영

제3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33조(재정)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보조금, 수입금, 수탁금, 찬조금, 주민자치회비로 충당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사업비
2. 수익금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및 바자회 등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
3. 수탁금 : 주민자치 활동을 위하여 주민자치회가 수탁받은 사업비
4. 찬조금 : 주민자치회 사업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이 제공한 후원금
5. 주민자치회비 : 위원의 월납 회비 및 특별 회비

제35조(주민자치회비) ①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 간 친목도모,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조직 강화, 사업 활동 활성화 지원, 그리고 봉사자에 대한 처우 등을 위하여 소정의 자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 회비의 금액 및 납부 횟수 등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③ 간사(사무국장)는 매월 정기회의 때 전월 주민자치회비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문서로 보고한다.
 ④ 간사(사무국장)는 주민자치회비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3회 이상 미납한 위원의 명단을 주민자치회비의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명기할 수 있다.

제35조(회비 운용) ①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재직기간 2년 이상의 위원이 퇴임할 시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회비 3개월 이상 미납자는 제외한다.
 ② 회장에게 업무수행에 따른 활동비 300,000원을 매월 단위로 지급한다.
 ③ 주민자치회 업무추진과 관련한 접대 및 회의 관련 식대의 지출. 단, 익월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④ 주민자치회 활동과 관련한 외부 회의 및 교육 참가자에 대한 식대. 단, 익월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⑤ 덕양구 주민자치협의회 연회비
 ⑥ 창릉동 지역행사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경우
 ⑦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출하고 익월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제36조(재정관리)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관내 소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제34조 각호의 재정 수입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 및 지출)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 관리 및 수강료 징수·환불, 예산지출 등 회계처리는 간사(사무국장)가 담당 하며, 모든 지출 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품의서에 지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주민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단, 제34조 재정 항목 중 수익금의 지출 행위는 동장의 협조를 받은 후 주민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다만,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의 경우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지출품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출납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출품의서 및 증빙서류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철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결산 및 보고) ① 간사(사무국장)는 자치센터 운영 등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매 분기 종료 후 첫 번째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사무국장)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달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상벌) ① 주민자치회 회장은 회장단 회의를 거쳐 시장상, 의원상, 의장상, 회장상 등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을 제외한 징계(정직, 경고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제6장 주민자치센터

제40조(시설관리 및 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동장이 관리·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시설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운영한다.

1. 주민자치실
2. 대회의실(4층 및 5층)
3. 문화센터 2층 강의실
4. 문화센터 3층 강의실 및 체력단련 센터
5. 4층 강의실 및 자치센터의 부속 창고

제41조(이용 시간) ①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② 프로그램의 특성상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장의 허락을 받아 이용 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제42조(프로그램 선정·운영 등) 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조례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한다.

- ②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주민자치회에서 정한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강생은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창릉동 거주 주민에게 강좌 신청 자격을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3.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조정은 강사와 수강생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4. 프로그램당 운영시간은 분기 12주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3조(프로그램의 신규 설치·폐지) ① 주민은 프로그램의 신규 설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

여야 한다.

- ②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장은 프로그램 수강생이 정원의 3분의 1 이하일 때, 혹은 강좌와 관련한 각종 민원이 발생할 때는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 있다.
- ⑤ 프로그램 폐지 시에는 사전에 강사에게 폐지 통보를 하여야 하며 강사는 주민자치회장의 통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⑥ 강사의 의견 및 프로그램 폐지에 관하여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제44조(프로그램의 이용 제한) 주민자치회장은 시행규칙 29조의 이용 수칙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해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수강료) ① 수강료는 조례 제34조, 시행규칙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수강료는 3개월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강사 및 강사료) ① 강사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서식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계약서를 작성한다.

- ② 조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각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수강료 납부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경우 100분의 90
2. 수강료 납부 수강생이 11명 이상 15명 이하인 경우 100분의 85
3. 수강료 납부 수강생이 16명 이상인 경우 100분의 80

4. 단,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일부 강의에 대해 강사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월 해당 프로그램의 휴강 또는 폐강이 있는 경우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④ 주민자치회장은 강사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 ⑤ 주민자치회장은 불참한 강사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장은 자치센터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강사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강좌 개설 시 주민자치회 심의에 반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7조(강사 및 강사료)의 경우, 2025년 4/4분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규정 등을 준용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